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 또는 단체명	연락처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주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나. 피해구제지원기관 운영계획서 1부 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성폭력피해상담소 신고증 1부 나. 피해구제지원기관 운영계획서 1부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청 기관 또는 단체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등 피해구제 업무를 3년 이상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피해구제지원기관 운영계획서 1부 다.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라.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